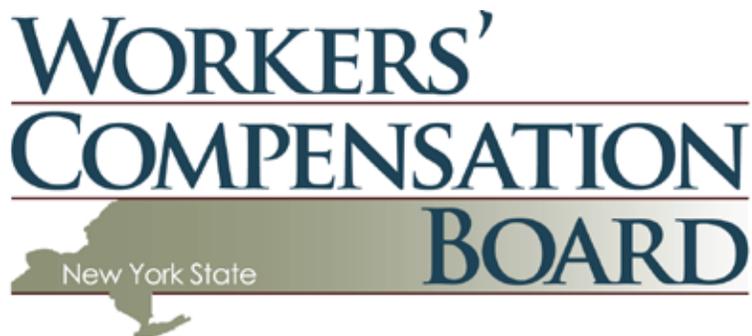


---

# 직원 상해보험 사기란 무엇인가?

사기 행위는  
중단해야 할 중범죄이며 ....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 사기 행위란?

직원 상해보험 사기는 고의적으로 사취하기 위해 직원 상해보험금 청구 또는 직원 상해보험과 관련된 진술을 거짓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원 상해보험 사기는 E 등급 중죄로서 벌금 및/또는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연속으로 위반할 경우 D 등급 중죄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지 않는 회사에게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 감사관실(Office of the Fraud Inspector General)은 회사, 의료 서비스 기관, 보험회사, 변호사, 직원 등 직원 상해보험 시스템의 특정 당사자의 사기 혐의를 조사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 직원 상해보험 사기는 중죄!

사기 행위 신고 연락처  
**1-888-363-6001**

## 일반적 형태의 사기 행위

### 변호사의 사기 행위

- ◆ 변호사/면허를 가진 대리인이 의뢰인 및/또는 자신을 위한 보상을 확보하거나 거절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실에 대해 거짓 진술하는 행동.

### 변호사 사기 행위의 예

- √ 거짓 보험금 청구를 권유하기 위해 고객을 고의적으로 지원.
- √ 보험금 청구서를 거짓으로 접수하도록 설득.

## 사기 행위는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뉴욕주 직원상해보험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는 보건복지부 감사관실(Office of Fraud Inspector General)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시스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기성 보험금 청구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통해 시스템의 정직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비용을 더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 사기 행위는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보험료 청구를 부풀리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거짓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일요일에 레저 활동에 참여하다가 부상을 입었으며 월요일에 업무 관련 사고로 신고하는 것도 사기 행위에 해당하고, 직원이나 급여를 잘못 분류하는 회사의 행동도 사기 행위에 해당하고, 잘못된 의료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부풀린 청구서를 제출하는 의료 서비스 기관의 행동도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거짓 청구서를 접수하도록 권유하는 변호사나 급여 지급 거절을 위해 증거를 조작하는 보험회사의 행동도 사기 행위에 속합니다.

사기 행위는 모두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회사의 손익에 영향을 주므로 모든 직원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추가적인 직원을 고용하거나 직원 임금을 올리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인상된 보험료 납부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더 높은 가격으로 고객에게 비용 부담을 주게 됩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사기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 회사의 사기 행위

- ◆ 회사가 직원을 위한 급여 지급을 회피하거나 거절하거나 대신 수령하기 위해 사실에 대해 거짓 진술하거나, 부상을 당한 직원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급여에 대한 권리를 고의로 거짓 전달하는 행동.
- ◆ 직원 상해보험 계약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거나 갱신하기 위해 회사가 고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알리는 행동.

## 회사 사기 행위의 예

- √ 급여를 축소 보고하여 업무 위험이나 노출에 대해 거짓 전달, 급여를 잘못 분류, 또는 경험 기준 조절이 높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유권에 대해 거짓 진술.
- √ 직원에게 직원 상해보험 수당이 근무 첫째 날부터 유효함을 알리지 않음.

## 의료 서비스 기관의 사기 행위

- ◆ 직원 상해보험 시스템의 혜택이 적용되는 서비스에 대해 비용 청구의 근거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거짓 진술.
- ◆ 의사, 재활 카운셀러, 약사 또는 척추 교정 전문가와 같이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자가 거짓 행위를 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자 사기 행위의 예

- √ 진료한 적이 없거나 치료한 적이 없는 환자의 진료에 대해 청구.
- √ 동일한 의료에 대해 다양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중복으로 청구 및/또는 수령하며 반환하지 않음.

## 보험회사 사기

- ◆ 보험금 청구를 거절 또는 지지하거나 보험금 청구서를 위탁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고려사항을 제시하거나 수락하기 위해 사실을 고의로 왜곡한 보험금 청구.

## 보험회사 사기 행위의 예

- √ 환자 추천에 대한 암시적 약속의 대가로써 의사가 보낸 선물을 수령.
- √ 급여 제공 거절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 증거를 조작.

## 직원의 사기 행위

- ◆ 사실에 대해 고의적으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하거나 다른 사람이 거짓 진술하게 하는 행동.
- ◆ 그러한 거짓 진술은 고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의가 아닌 잘못된 진술은 사기가 아닙니다.
- ◆ 거짓은 보험금 청구에 중요한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 직원 사기 행위의 예

- √ 업무 중 발생하지 않거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에 대해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
- √ 직무 상태에 대해 직접 질문했을 때 해직이나 심의 중이거나 자격 재검증 중이라고 거짓 답변.

---

**직원**  
**상해보험 위원회 연락처**  
**1.866.750.5157**

사기 행위 신고 직통전화 • **1.888.363.6001**  
기업체 옹호 담당실 • **1.800.628.3331**  
부상 직원 옹호 담당실 • **1.800.580.6665**  
이의신청 담당실 • **1.877.258.3441**  
준법 • **1.866.298.2362**  
장애 급여 • **1.800.353.3092**

**Albany District Office**  
100 Broadway - Menands • Albany, NY 12241  
**1.866.750.5157**

**Binghamton District Office**  
State Office Building, 44 Hawley Street  
Binghamton, NY 13901 • **1.866.802.3604**

**Brooklyn District Office**  
111 Livingston Street • Brooklyn, NY 11201  
**1.800.877.1373**

**Buffalo District Office**  
Cyclorama Building • 369 Franklin Street  
Buffalo, NY 14202 • **1.866.211.0645**

**Long Island District Office**  
220 Rabro Drive, Suite 100 • Hauppauge, NY 11788-4230  
**1.866.681.5354**

**Manhattan District Office**  
215 W. 125th Street • New York, NY 10027  
**1.800.877.1373**

**Peekskill District Office**  
41 North Division Street • Peekskill, NY 10566  
**1.866.746.0552**

**Queens District Office**  
168-46 91st Avenue • Jamaica, NY 11432  
**1.800.877.1373**

**Rochester District Office**  
130 Main Street West • Rochester, NY 14614  
**1.866.211.0644**

**Syracuse District Office**  
935 James Street • Syracuse, NY 13203  
**1.866.802.3730**

---